

# 변경대비표(모자전환)

1. 대상 펀드: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
- 3) 운용역 변경

3. 효력발생 예정일: 2022년 4월 29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
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 <u>투자신탁</u> 1 호(주식)	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 <u>자투자신탁</u> 1 호(주식)

2)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

모투자신탁	자투자신탁
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80% 이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1.~7. <생략> 8. <신설>	1.~7. <좌동> 8. “모자형”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(모집합투자기구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② <생략> 1.~5.<생략> 6. <신설> ③ <생략> ④ <생략> ⑤ <신설>	② <좌동> 1.~5. <좌동> 6. 모자형 ③ <좌동> ④ <좌동>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제14조(투자목적)	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홍콩(HONG KONG, 香港)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“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”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홍콩(HONG KONG, 香港)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b>제15조(투자대상 자산 등)</b>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<b>1.~12. &lt;생략&gt;</b> ②<생략>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<b>1.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</b> <b>2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b> ②<좌동>
<b>제16조(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)</b>	집합투자업자는 <b>제17조</b>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<b>1.~9. &lt;생략&gt;</b>	집합투자업자는 <b>제15조</b>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<b>1. 제3조제5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</b> <b>2. 제15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다.</b>
<b>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b>1.~10. &lt;생략&gt;</b>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 <b>1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b> <b>2. 환매조건부매수</b>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b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	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b>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</b>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<b>1.~4. &lt;생략&gt;</b> <b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b> ②~④ <생략>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b>제16조 제1호 및 제2호</b>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<b>1.~4. &lt;좌동&gt;</b> <b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b> ②~④ <삭제>
<b>제23조의2(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매수)</b>	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
<b>제24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</b>	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

		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~③ <생략>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</u> 할 수 있다.	①~③ <좌동>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</u> 할 수 있다.
제28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<생략>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	① <좌동>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( <u>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</u> )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
제35조(수익자총회)	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  ②~⑨ <생략> ⑩ <신설>  ⑪ <생략>	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<u>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</u>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. ②~⑨ <좌동> ⑩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,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u> ⑪ <좌동>
제48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 <생략>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~5. <생략> ③~④ <생략>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① <좌동>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 <u>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</u> )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~5. <좌동> ③~④ <좌동>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 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</u> 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 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</u> 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⑦~⑫ <생략>	⑦~⑫ <좌동>
----------	-------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	이 투자신탁은 <u>해외 주식인 홍콩(HONG KONG, 香港)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"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.</u>	이 투자신탁은 <u>해외 주식인 홍콩(HONG KONG, 香港)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</u>
제 2 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. <u>또한,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 (보수차감전, 세전 수익률 기준)</u>  <이하 생략>	이 투자신탁은 " <u>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"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u>  이 투자신탁은 "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인 "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며,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 (보수차감전, 세전 수익률 기준)  <좌동>
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	<신설>	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. <u>또한,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 (보수차감전, 세전 수익률 기준)</u>  ※ 비교지수: 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

3) 운용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김명준	송진용

##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**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**

**1. 경력**

1) 성명: 송진용 본부장

2) 주요경력

(03년~06년) 대신증권/대신투신운용 마케팅, 주식운용

(06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

**2. 운용현황(2022.3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**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11-10	299,115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013-10-21	138,271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007-02-09	107,660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9-02-02	88,394
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6-05-09	87,353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5-09-18	78,287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7-11-14	62,496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11-21	61,275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7-11-14	59,677
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 2 호(주식)	2009-07-23	57,349

**3. 운용성과(2022.3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**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7.54	-15.47	-17.96	99.95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4.97	-11.62	-16.37	86.06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6.06	-12.49	-18.13	356.54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7.98	-14.62	-8.87	150.46
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0.93	2.82	8.27	154.89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5.38	-0.76	-1.08	216.20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14.07	28.53	15.86	8.55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2.88	-8.63	-11.98	85.63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67.31	-81.53	-82.69	-81.19
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 2 호(주식)	-6.32	-12.16	-17.30	162.96